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19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1. 15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11. 15

다. 상정·의결일자 : 2002. 4. 15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

-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 된 읍사무소를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의 및 도심 균형발전을 기여하고자 함.

공유재산 매각

- 현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군수관사 및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현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

- 위 치 :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외 4필지
- 면 적 : 토지 5필지 5,195㎡, 건물 1동 1,500㎡
- 재산가액 : 2,200,000천원

공유재산 매각현황

- 군수관사
 - 소재지 :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 면 적 : 토지 605.0㎡, 건물 201.13㎡
- 재산가액 : 400,000천원
- 매각시기 : 2002년 상반기

○ 고성읍사무소

- 소재지 :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 면 적 : 토지 1,499.0㎡, 건물 942.96㎡
- 재산가액 : 1,800,000천원
- 매각시기 : 읍사무소이전 신축 완료 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제91회(임시회)·제92회(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성읍민의 의견수렴의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고성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의견수렴을 위한 고성읍 전 세대주의 설문조사 실시후 심사한다는 내용으로 심사 보류된 안건임.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군수관사와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그 매각한 재원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 읍사무소를 고성읍의 중앙지점인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므로서 도심의 균형발전과 아울러 시가지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전 신축시 읍사무소 주변지역 상가 및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며 이에대한 대책과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를 대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 이전사업 전반에 걸쳐 제안자의 대안과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참고로 고성읍사무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투표결과 공고문을 첨부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청사이전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읍민들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 답 : 공청회 절차는 없었으며, 고성읍 이장단 서명날인 하여 읍청사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건의서가 제출되었음.
- 문 : 매각 재산과 신축 재산이 읍사무소 신축이전에 다른 재원없이 충족 되는가?
- 답 : 매각한 후 신축은 서로 상계되리라고 보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추진되면서 교부세나 여타 재원은 염출하면서 충당할 계획이며 이전전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할 것임.
- 문 :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는 재원으로 할 것인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답 :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투·융자 심의를 받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 이전코자 하는 장소가 도시계획 구역안이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읍청사는 요지로 매각코자 할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며, 재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수입의 증대차원에서 매각토록 노력하겠음.
- 문 : 현재 공유재산 매각과 읍사무소 신축과의 계획 일정에 차질이 예상 되는데 대책은?
- 답 : 공유재산 매각과 신축은 관사 매각은 회계연도내에 이루어 지리라 생각되나 읍사무소전은 신축과 매각은 서로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3개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세출과 세입은 1회계 연도가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 문 : 읍사무소 신청사 부지 매입 예상 가격은?
- 답 : 시세에 유동성이 있으나 평당 20~30만원정도 되리라 생각됨.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4.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